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2016년 8월 pp.9~31
한국세무학회

IFRS 4 보험계약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업 관련 세법의 개정 방향

김은경* · 김문철**

<요 약>

IFRS 4 2단계 도입 후 보험사는 보험료수익과 관련 비용 및 보험부채의 측정과 인식 방법 등을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기준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세법 또한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IFRS 4 2단계의 도입으로 보험업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정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주요 항목별로 고찰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IFRS 4 2단계에 따르면 책임준비금은 결산상 더 이상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게 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IFRS 4 2단계 적용 시 세무목적상 종전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상 보험료수익의 귀속시기를 IFRS 4 2단계와 일치시킬 것을 제안한다. IFRS 4 2단계에 따라 보험료수익을 인식하더라도 전 기간의 보험료수익은 현금으로 수취하는 보험료와 일치하게 될 것이며 다른 산업과 일관되고, 기간별로 수익이 안정적이며, 보험료수익의 사외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준비금 인식을 위한 세무조정이 불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행 비상위험준비금과 신계약비와 관련된 세법 규정이 변경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비상위험준비금은 IFRS 4 2단계하에서도 현재의 규정을 변경 없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계약비의 상각에 따른 손금 산입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K-IFRS 제1104호와 IFRS 4 2단계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FRS 4 2단계 도입에 대비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는 법인세법의 내용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을 앞두고 세법의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본 연구는 그러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IFRS 4 2단계, 보험업, 보험료수익, 책임준비금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세무학과, piggy0925@hanmail.net, 주저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kimc@kh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30일 1차수정일 2016년 5월 19일 2차수정일 2016년 7월 8일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9일

I. 서 론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통한 회계기준의 단일화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적용해오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표시의 변경뿐 아니라 선진화된 재무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사업전략 및 영업 전반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가 사실상 그 내용을 확정하고 2016년 말 또는 2017년 초에 공표할 예정인 IFRS 4 보험계약 2단계 회계기준(이하 'IFRS 4 2단계')은 다시 한 번 보험 산업의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제1104호는 기존의 실무 관행을 많은 부분 인정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시 보험회사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부채(책임준비금)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으며 보험료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의 인식(책임준비금의 전입) 방법에도 변동이 없어 손익에 대한 영향은 미미했다. 그러나 IFRS 4 2단계로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부채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공정가치법과 유사한 현행이행가치(current fulfillment value)법으로 변경해야하며 보험료수익의 인식도 현금주의와 유사한 방법에서 발생주의에 따른 방법으로 변경해야한다. 이로 인해 개별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 전반을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업과 관련된 감독규정과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행 보험감독규정에서는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K-IFRS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업 관련 세법은 이러한 감독규정을 대부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무회계와 감독규정 및 세법은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 재무회계는 투자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세법은 국가의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그 동안 우리나라는 보험관련 회계, 감독규정, 세법이 일원화되어 있었다. 상장되어 있는 보험사의 수가 많지 않았고 보험업이 규제 산업이라는 점과 재무회계, 감독, 세무 목적별로 다른 재무정보의 산출을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의 비용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FRS의 도입국으로서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의 적용은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재무회계기준의 변경을 기점으로 변경된 회계기준이 감독이나 세무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기구와 세무당국은 계속 재무회계와 감독규정 및 세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없다면 현행 감독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지 아니면 국제 금융 감독의 방향에 발맞추어 Solvency II와 같은 새로운 감독규정을 도입할 것인지 감독기구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세법 역시 현재의

세법 규정을 유지할 경우 재무회계가 변경된 상황에서는 세무신고를 위한 별도 비용이 향후 수반될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IFRS 4 2단계는 보험계약 자체의 회계처리의 변경만을 수반하지만 보험업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규정은 보험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모두 포괄하여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별도의 연구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나 보험사는 2018년부터 새로운 금융상품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2020년 이후에는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감독기구는 보험사의 자산쪽에 적용될 새로운 회계기준과 보험사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부채에 적용될 회계기준이 감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거나 새로운 감독규정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IFRS 4 2단계로의 변경에 따른 세법의 개정 필요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물론 회계기준과 세법은 각각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회계기준이 변경되더라도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안정적 세원의 확보란 측면에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보험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는 세무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결산조정항목의 경우 IFRS 4 2단계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부분보다 적게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나 세무조정항목이 증가되어 회사는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유사한 규정을 두거나 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IFRS 4 2단계의 도입으로 이러한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IFRS 4 2단계의 도입으로 보험업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정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주요 항목별로 고찰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현행 K-IFRS 제1104호(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을 대부분 인정)와 2020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인 IFRS 4 2단계를 비교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세법 규정의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첫째,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는 총 보험기간 중 전반부에 유입되는 반면 보험금의 지급은 후반부에 이루어지는데 수취한 보험료가 익금으로 산입되는 시기에 결산상 비용으로 인식한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미래에 지출되는 보험금 및 사업비의 지출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IFRS 4 2단계에 따르면 책임준비금은 결산상 더 이상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게 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IFRS 4 2단계 적용 시 세무목적상 종전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상 보험료수익의 귀속시기를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실제 보험료를 수취한 시점에서 익금산입하고 있는데 IFRS 4 2단계를 도입하면 재무회

계의 발생주의에 따른 인식시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비상위험준비금과 신계약비에 관련된 세법 규정이 변경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IFRS 4 2단계에서는 신계약비를 직접신계약비와 간접신계약비로 구분하고 직접신계약비는 보험부채 평가시 현금흐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보험기간에 걸쳐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접신계약비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일 IFRS 4 2단계에 따른 회계처리를 세법이 인정한다면 신계약비의 상각에 따른 손금 산입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IFRS 4 2단계 도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세법의 모든 개정사항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며 IFRS 4 2단계의 도입 전 법인세법에 대한 더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IFRS 4 2단계에 따른 세법의 개선사항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세법 개정을 위한 검토의 출발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현행 보험회계기준과 IFRS 4 2단계를 비교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며 제Ⅳ장에서는 IFRS 4 2단계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한다. 끝으로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선행연구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으로 보험회사는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보험부채는 여전히 국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측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IASB가 보험계약 회계기준을 완성할 때까지 각국의 회계실무관행을 그대로 허용하는 임시적인 기준(현행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FRS 4 2단계가 도입될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에 대하여 처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 보험부채를 원가법에 따라 측정해온 국내 보험사의 경우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게 되면서 재무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회계기준에서는 보험료수익의 인식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실무 관행을 그대로 인정해주었는데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의 특수한 수익 인식 방법은 현금주의에 따른 수익인식방법과 유사한데 발생주의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다른 산업과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이 타 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회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IASB는 보험업의 실무를 개선하여 보험자가 보험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에 따

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여 보험료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그간의 선행연구 대부분은 주로 IFRS 4 2단계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오창수(2011)는 2010년 IASB가 발표한 1차 공개초안을 토대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험부채와 기존 보험부채를 비교하고 건강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IFRS 4 2단계의 적용 시 건강보험상품의 준비금이 당시의 보험부채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가법에 따라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회계기준과는 다르게 IFRS 4 2단계에서는 보험부채를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측정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이 연구 결과는 과거에 판매되었던 많은 건강보험상품을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평가할 경우 보험사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장형·김종원(2012)은 12개 상장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과거 K-GAAP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에서 대출채권, 보험계약채무,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의 5개 항목을 분석하고 전환일 시점에 보험계약채무,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보험업의 경우 전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부채에 적용되는 현행 IFRS 4는 실무관행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기준으로 과거 K-GAAP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의 결과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했을 뿐 보험회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의해 이러한 차이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금융상품에 관한 기준이 과거 K-GAAP과 달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석희(2013)는 2010년 IASB가 발표한 공개초안을 토대로 종신보험계약을 사례로 들어 새로운 보험부채의 평가방법을 따를 경우 과거 10개년도의 보험손익이 어떻게 재산출되는지를 보이면서,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이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보험손익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보험손익의 변동성은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으로 인하여 매우 커지게 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그 원인을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을 매 보고기간말 현행추정치에 따라 재계산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나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매우 컸으며 사망률 변경 및 경험조정의 현행추정으로의 변경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보험부채를 매 기간말 재측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의 보험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한 손익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2010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보험회사의 보험료수익과 보험비용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마진 즉 순액만을 표시(summarized margin approach)하도록 요구했었다. 그러나 매출액의 규모 즉 보험료수익 자체를 표시하는 것도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마진을 발생시키는 원천만을 나누어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익의 원천도 보여주면서 전체 규모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많은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할인율의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보험의 경우 엄청난 손익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IASB는 2013년 6월 수정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오창수·이행금(2013)은 2010년에 발표된 공개초안과 2013년에 발표된 수정된 공개초안을 비교하고 수정된 공개초안의 주요내용과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영향에 따라 감독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오창수·조석희(2014)는 오창수 외(2013)의 결과를 토대로 보험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모형화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종신보험계약을 사례로 들어 최근 5년간의 국내 경제상황 및 인구통계학적 상황을 반영한 보험손익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손익 변동성은 위험률 요소와 이자율 변동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보험부채의 변동과 보험손익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근거로 해당 연구에서는 당기손익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주로 위험 요소에 의한 보험부채 평가 금액의 변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총포괄손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률뿐만 아니라 이자율 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평가금액 변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오창수 외(2013)는 IFRS 4 2단계의 전환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회사가 과거에 판매했던 주요 상품들을 대상으로 부채를 평가하였다. 보험부채의 구성요소인 최적추정부채, 위험조정, 계약상 서비스마진 등을 추정하였으며 할인율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현행 책임준비금과 비교분석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배당 금리고정형 저축보험의 경우 IFRS 4 2단계 적용 시 보험부채가 증가하며 무배당 금리고정형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왕문·고영우(2012)는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험회계기준과 같이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방법을 요구하는 유럽의 Solvency II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그 동안 IASB가 발표한 공개초안의 내용과 유럽의 Solvency II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 및 규제기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창수 외(2012)는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보험감독규정이 변경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Solvency II의 부채평가방법에 따라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그 금액과 현행 책임준비금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Solvency II에 따른 준비금은 현행 책임준비금 보다 컸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Solvency II에서는 현금흐름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실제위험률의 경험치와 해약률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IFRS 4 2단계에서도 Solvency II에서와 같이 현금흐름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위험률의 경험치와 해약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도 보험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FRS 4 2단계의 도입에 따른 세법의 개선사항을 다룬 선행연구는 없으나 IFRS 도입 시점에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세법 개정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다룬 논문과 보험업의 준비금과 관련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는 세제를 다룬 논문이 있다. 김문철·이준규(2008)는 IFRS 적용 시 상장기업의 법인세 세무조정과 조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검토하고 법인세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다만 보험업과 같은 특수 산업에 국한되는 회계기준은 검토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심태섭(2011)은 IFRS의 도입에 따라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

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법의 개정은 임시방편적인 개정으로 평가하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과세소득 이연과 감가상각 단위에 대한 규정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조형태 외(2011)는 IFRS 도입이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준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IFRS에 따르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손해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은 세무상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손해보험업계의 대응노력과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였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는 책임준비금과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모두 설정하여야 하는데, IFRS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인식을 금지하고 있어, 기존에 적립하였던 비상위험준비금을 일시에 환입할 경우 엄청난 세부담과 앞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손해보험사의 비상위험준비금을 세무상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한승목 외(2010)는 금융기관의 경우 특수 업종으로 K-IFRS의 도입영향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하고, 금융기관들의 K-GAAP과 K-IFRS를 적용했을 때의 차이와 K-IFRS의 도입 시 세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세법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K-IFRS의 적용에 따라 과세소득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나 납부세액이 증가하였고 세무조정이 요구되는 항목들이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부 결산조정항목을 신고조정항목으로 전환할 것과 세무조정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K-IFRS 제1104호와 IFRS 4 2단계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FRS 4 2단계 도입에 대비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는 법인세법의 내용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을 앞두고 다양한 방향의 세법의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본 연구는 그러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I. 기존 보험회계기준과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의 비교 분석¹⁾

1. 현행 보험부채(책임준비금)의 인식과 평가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²⁾. 생명보험사는 보험

1) IFRS 4 보험계약 2단계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김은경(2015)을 참조할 것.

2)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참조

업법 제12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및 제6-11의2조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준비금 및 재보험료적립금, 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하고 있다. 이 중 보험료적립금은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대부분을 차지하며 순보험료방식에 의해 측정되고 있다. 순보험료방식이란 부가보험료(신계약비, 유지비 및 수금비 등)는 고려하지 않고 순보험료와 보험금만을 고려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보험료적립금은 보험계약시점의 예정이익률, 예정손해율, 예정사망률(생존율), 예정상해율, 예정해약률, 예정사업비율을 이용하여 측정(발행연도법, Lock-in method)한 값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표준기초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적립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가능한 것은 현행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보험부채에 대하여 부채적정성평가만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한다면 보험부채의 명칭 및 구분 여부나 화폐의 시간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되더라도 이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과거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부채적정성평가를 통해 그 값의 적정성만을 평가해오고 있다. 여기서 부채적정성평가란 보고기간말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을 현행 추정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과 보험자가 인식한 보험부채를 비교하여 그 값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험부채로 인식한 값이 부족하다면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부채가 현행가치로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되더라도 기존의 회계관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K-IFRS의 도입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은 과거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부채를 측정해오고 있다. <표 1>은 현행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구성과 정의를 보여준다.

〈표 1〉 책임준비금의 구성과 정의

책임준비금	정 의
보험료적립금	매회계연도말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초율(표준이율,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책임준비금의 대부분(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때문에 통상 책임준비금이라 하면 보험료적립금을 말함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납입기일이 당해사업연도에 속하는 수입보험료 중에서 사업연도말 현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함
지급준비금	매회계연도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환급금·계약자배당금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이 계류 중인 금액이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금액을 말함

〈표 1〉 책임준비금의 구성과 정의 (계속)

책임준비금	정 의
계약자배당준비금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이자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위험률차배당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함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유배당상품의 계약자지분에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한 후에도 남는 잉여금이 있는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함
배당보험손실준비금	5년 내의 회계연도에 배당상품 결손을 보전하거나, 주주가 배당보험(유배당상품)의 손실을 기 보전한 금액이 있는 경우 주주가 보전한 금액을 한도로 주주지분에 전입하고, 잔여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함
재보험료적립금	수재한 경우 출재보험사가 적립하지 아니한 책임준비금 전액을 재보험료적립금의 과목으로 적립함
보증준비금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는 금액

2. 현행 보험 기준과의 비교

가. 보험부채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의 영향

(1) 책임준비금

현재 보험부채는 측정 시 보험계약시점의 예정이익률, 예정사망률(생존율), 예정손해율, 예정상해율, 예정해약률, 예정사업비율과 보험계약시점의 이자율(또는 표준이자율)을 적용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있다. 즉 발행연도법에 따라 보험계약시점의 가정들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고 보험부채를 측정한다. 반면에 IFRS 4 2단계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정가치법과 유사하게 평가(현행이행가치)시점의 가정과 이자율로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한다. 즉 IFRS 4 2단계에서는 매 보험부채의 평가시점마다 현행의 추정치를 적용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평가연도방식(Lock-out method)을 따른다. 이에 따라 과거 고금리 확정형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현재의 저금리를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하므로 보험부채의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 결산시점마다 현행 할인율에 기초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하므로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자본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는 현행 보험부채와 IFRS 4 2단계에 따른 보험부채의 구성과 평가방법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2〉 보험부채의 구성 및 평가방법의 차이 비교

	현행 K-IFRS 제1104호	IFRS 4 2단계
구성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준비금 장래에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 보험회사의 잉여금 중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배당금	현행의 계약이행의무와 장래의 이익
평가	원가평가(최초 보험계약 시점의 기초율(위험률, 할인율 등)을 전 보험기간에 동일하게 적용)	시가평가(매결산시점마다 기초율을 재산출하여 적용)

(2) 신계약비

신계약비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례수당, 점포 운영비, 판매촉진비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신계약비가 보험기간에 걸쳐 효익을 제공하는 선급비용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이연신계약비로서 자산으로 인식하고 7년 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는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IFRS 4 2단계에서는 직접 귀속이 가능한 신계약비의 경우 보험부채의 현금흐름 중 일부로 신계약비를 반영하여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부가보험료를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에 포함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영업보험료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보험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보험료수익의 인식

현행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회계기준에서는 보험료수익의 인식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의 특수한 수익 인식 방법은 현금주의에 따른 수익인식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생주의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다른 산업과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타 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회계기준의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이다. 이에 IASB는 이러한 보험업의 실무를 개선하여 보험자가 보험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에 따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여 보험료수익을 인식하도록 IFRS 4 2단계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IFRS 4 2단계에서 투자요소는 보험료수익과 보험금에서 인식하지 않는다. 이 투자요소는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사실상 은행업의 경우에는 투자요소를 부채로 계상하고 상환 시 부채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보험업의 재무제표는 타 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가능하게 될 것이다. <표 3>에서는 현행 보험회계기준과 IFRS 4 2단계에 따른 보험료수익과 보험비용의 인식 방법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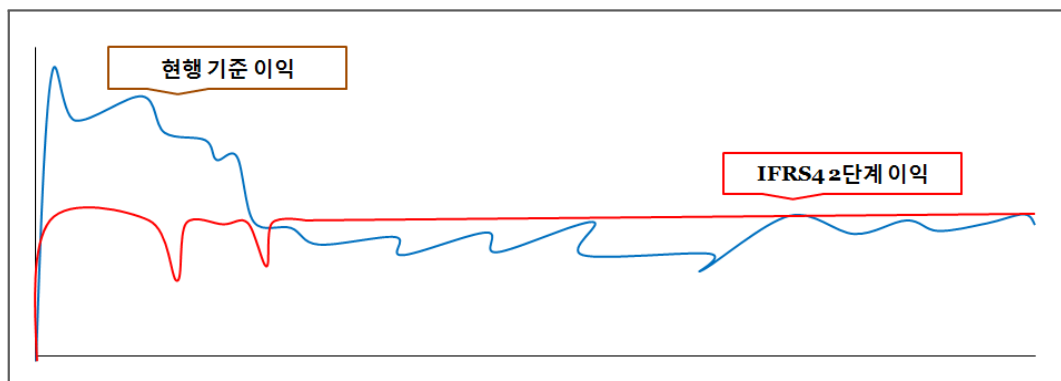
〈표 3〉 보험료수익과 보험비용의 인식 방법 비교

	현행 K-IFRS 제1104호		IFRS 4 2단계	
수익인식 방법	인식시기	보험료의 수취일	인식시기	보험사고의 발생일 및 비용 발생일
	측정	수취한 현금 전체 (저축요소+보장요소+사업비)	측정	당기의 보장과 관련된 예상 보험금 및 사업비+위험조정의 변동+계약상서비스마진의 상각
비용인식 방법	인식시기	사고발생일 및 비용 발생일	인식시기	사고발생일 및 비용 발생일
	측정	실제 발생한 보험금 및 사업비 (저축+보장+사업비)	측정	실제 발생한 보험금 및 사업비 (보장+사업비)

참조 : 한국회계기준원, 2015, “IFRS 보험회계기준 2단계 도입과 한국의 대응”

IFRS 4 2단계로 인한 보험료수익 인식의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수익의 규모와 인식 시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보험료수익에서 모든 투자요소가 제거되면서 보험료수익은 크게 감소할 것이며 보험료를 수취한 시점이 아니라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행의무를 제공하는 각 기간에 걸쳐 보험료수익을 인식하면서 보험료수익과 이익이 평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1>은 정기보험의 경우 IFRS 4 2단계 적용 후 이익이 평준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정기보험의 현행 기준에 따른 이익과 IFRS 4 2단계에 따른 이익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2015, ‘IASB 한스위원장 초청 보험 이해관계자 회의’

IV. IFRS 4 2단계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의 필요성

회계기준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회계의 기준이다. 반면에 세법은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조세를 부과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조세를 부담하여야 할 한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렇듯 회계기준과 세법은 각각의 목적이 서로 다르며, 또한 안정적 세원의 확보란 측면에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보험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는 세무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결산조정항목의 경우 IFRS 4 2단계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부분보다 적게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나 세무조정항목이 증가되어 회사는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유사한 규정을 두거나 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IFRS 4 2단계의 도입으로 이러한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FRS 4 2단계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과 성과에 대한 보고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보험회사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부채의 평가 방식을 변경시킴으로써 보험부채의 금액이 크게 증가될 것이며 현행 IFRS 4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는 책임준비금전입액은 더 이상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 보험금과 실제 사업비만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한다. 따라서 IFRS 4 2단계의 도입 후 더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법인세법은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IFRS 4 2단계에 따라 실제 보험금 및 실제 사업비에 대응하여 예상 보험금과 예상 사업비 및 위험조정 상각액과 계약상 서비스 마진의 상각액의 합으로 인식하는 보험료수익을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세무상 보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수입된 보험료 중 선수입된 보험료는 제외하고 수익으로 계상한 경과한 기간의 보험료상당액을 합하여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의 익금산입 시기와 방법은 사실상 현행 회계와 동일하다. 현행 회계상의 보험료수익은 발생주의와 실현주의의 회계개념에 근거한 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금주의에 근거한 수익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IFRS 4 2단계는 이 부분을 개선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행 세법에서 회계기준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고 IFRS 4 2단계에 맞춘 법인세법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보험업과 관련된 현행 법인세법을 살펴보고 IFRS 4 2단계로의 변경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을 검토한다.

1. 책임준비금

법인세법상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이러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보험업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이유는 미래에 지출할 보험금 등을 현재시점에 미리 손금에 산입하여 사외유출을 감소시켜 미래에 지출할 보험금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보험업은 보험료의 수취시점과 보험금의 지급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수취한 보험료가 익금으로 산입되는 시기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미래에 지출되는 보험금 및 사업비의 지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IFRS 4 2단계에 따르면 결산상 책임준비금전입액은 더 이상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즉 IFRS 4 2단계에서는 법인세법 제30조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30조의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 방안으로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안 중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당초의 책임준비금의 정책적 목적을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 법인세법 제30조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결산조정사항에서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익금산입 시기를 현행과 다르게 조정하지 않는다면 정책적 목적을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는 책임준비금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해야 한다. 그러나 IFRS 4 2단계에서 회사가 계상하는 보험부채는 현행의 책임준비금과 다르다. 무엇보다 현재 책임준비금은 원가법에 따라 측정되는 반면 IFRS 4 2단계에서 보험부채는 현행가치로 측정되며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신고조정으로 현행과 같은 금액의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부채의 평가 시스템을 세무목적에 위해 원가법으로 계산하는 것과 재무회계를 위해 현행가치로 측정하는 것 두 가지로 유지해야 한다. 만일 회사가 세무목적만을 위해 두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면 이것은 회사에 엄청난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른 대안은 IFRS 4 2단계에서는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30조를 삭제하고 보험료수익의 익금산입시기를 개정하여 실제 보험금과 관련 비용이 인식되는 시점에 보험료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살펴본다.

2. 보험료수익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이 증가할 경우 그 원인과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익금으로 파악하는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다. 법인세에서 익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때문에 익금항목은 과소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모두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따라서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³⁾이다.

또한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라는 시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한다. 따라서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게 되는데 법인세법은 이를 위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이 권리의무확정주의는 그 사업연도의 기간에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인식·파악한다는 기준으로 금전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익을 인식·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일반재무보고목적의 회계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재무보고목적의 회계에서 수익은 의무이행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이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점에 인식하며 비용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대응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일반목적재무보고 회계의 이러한 원칙은 회계담당자의 주관에 개입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보다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여 권리와 의무의 확정시점을 귀속시기로 정하고 있다⁴⁾.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보험료액)을 익금으로 하고 이 보험료수익을 익금으로 귀속시키는 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또한 이러한 법인세법의 익금으로의 인식금액과 귀속시기는 현행 일반목적재무보고회계와 동일하다. 현행 회계에서 보험료수익은 회수기일도래기준을 택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료가 유입되는 시점과 회수기일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무상 익금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회계상 인식한 보험료수익금액은 차이가 없으며 귀속 시기의 차이도 없어 보험료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현재 불필요하다. 그러나 IFRS 4 2단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회계에서의 보험료수익의 인식금액과 인식시기의 차이가 있다. 즉 IFRS 4 2단계의 도입으로 결산상 인식한 수익금액과 세무상 인식해야 할 수익금액은 인식금액 및 인식시기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IFRS 4 2단계에 따라 인식한 보험료수익이 현행 세법에 따른 익금보다 과소 또는 과대 계

3) ‘신고조정사항’이란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에 반드시 신고조정(익금산입, 손금산입)을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한편, ‘결산조정사항’이란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에 신고조정(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손금항목을 말한다(임상엽·정정운, 2013 참조).

4)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을 참조하였다.

상될 경우 신고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IFRS 4 2단계의 도입 시 현행의 세법과 차이가 나는 보험료수익의 원천별로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 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투자요소

IFRS 4 2단계에서는 보험료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요소를 더 이상 보험료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IFRS 4 2단계의 도입 시 보험료수익은 투자요소에 해당하는 분만큼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세무조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투자요소에 해당하는 분만큼 수익으로 인식 후 보험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하든 아니면 보험료수익과 보험금의 지급에서 제외(금융부채의 상환)하든 간에 이로 인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영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제1항의 수입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과 같이 보험료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투자요소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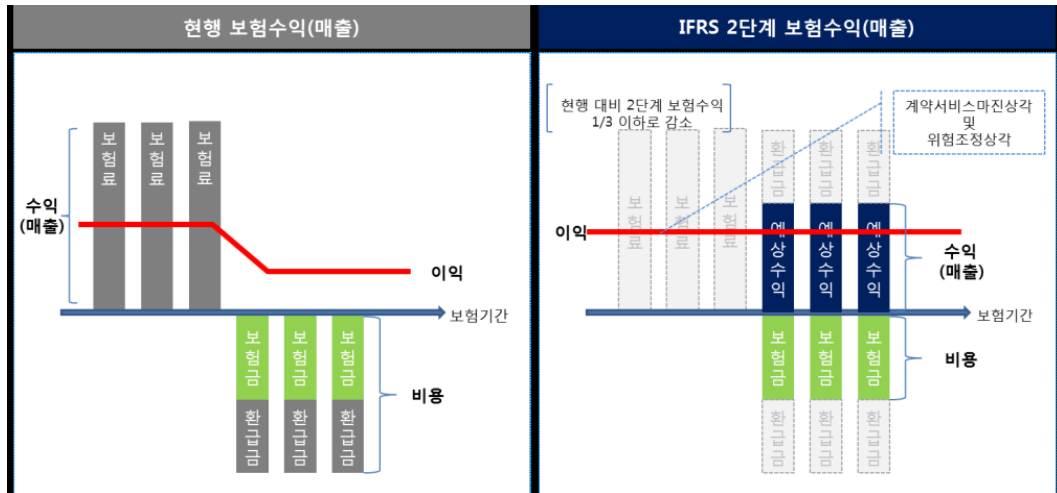
또한, 보험료수익에서 투자요소와 관련된 금액을 제외할 경우 보험료수익에 근거한 보험업의 접대비 손금인정금액은 많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업의 경우도 투자요소는 은행업의 영업수익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험료수익에서 투자요소가 제외됨으로써 접대비 손금인정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나. 보험료수익의 인식시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의 경우 실제로 현금이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보험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며 미경과보험료를 포함해 선수입보험료만을 차감하여 보험료수익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IFRS 4 2단계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고, 보험 서비스의 제공시점에 보험료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 보험료수익을 인식한다. 통상 보험에서 보험금의 지급은 이후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세무상 보험료수익을 익금으로 인식하는 시기는 재무회계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기보다 훨씬 빠르다. <그림 2>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한다. 따라서 보험료수익만을 고려한다면 보험계약 초에는 결산서상 적게 반영되어 있는 보험료수익을 조정하기 위해 신고조정을 통해 보험료수익을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고 이후에는 익금불산입의 신고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책임준비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의 책임준비금을 결산조정이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험료수익의 사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보험료의 수취시점에 보험료수익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른 IFRS 4 2단계의 보험료수익 인식 시점에 익금산입하는 방법이다. 물론 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험료는 수취시점에 익금산입해야 한다.

〈그림 2〉 보험료수익 인식 방법의 변경



자료 : 신병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15, “보험사 경영패러다임의 변화(IFRS 4 2단계 도입 영향과 준비)”

수취하는 보험료는 계약상 수취할 권리가 성립된 것이며 확정된 금액이므로 세무상 금액으로서 객관적이며 안정적이다. 이에 반해 IFRS 4 2단계의 보험료수익은 예상 보험금과 예상 사업비 및 위험조정 상각액과 계약상 서비스 마진의 상각액의 합으로 측정되므로 회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어 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료수익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세무상 금액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같은 이유를 근거로 법인세법상 보험료수익의 귀속시기를 IFRS 4 2단계 재무회계의 발생주의에 따른 인식시기와 일치시킬 것을 제안한다. 첫째, IFRS 4 2단계에 따라 보험료수익을 인식하더라도 전 기간에 걸친 보험료수익은 실제로 현금으로 수취하는 보험료와 일치하게 된다(투자요소 제외). 둘째, 각종 사업에서 익금으로 산입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이며 IFRS 4 2단계에서 인식하는 보험료수익은 이에 대응하는 금액이다. 셋째, IFRS 4 2단계에서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과 사업비에 대응해 예상 보험금과 사업비 및 계약상 서비스 마진 상각액의 합을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기간별로 이익이 일정하고 안정적이다. 즉 안정적인 세원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IFRS 4 2단계 도입 시 세무상 보험료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행의 세법상의 제도가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조기에 거두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실제 보험료를 수취하였을 때 그 금액을 익금산입하므로 객관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은 수익이 아닌 이익에 부과되는 것이며 보험사의 실제 이익은 보험금과 관련 비용이 발생하고 나서야 확정된다는 측면에서 보험금과 관련 비용이 아직 발생하기

전인 보험료 수취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하여 현행과 같은 책임준비금을 신고조정을 통해서 산입하도록 할 수 있으나 현행의 책임준비금은 IFRS 4 2단계나 앞으로 변경될 감독규정과는 다르게 원가법에 근거한 방식으로 보험사는 세무목적상 별도의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해야될 수 있다.

3. 비상위험준비금

예정사고율을 초과하는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K-IFRS에서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보험금에 대한 부채 인식을 금지하고 있으며 IFRS 4 2단계도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어 손해보험사는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11년 K-IFRS 도입 시 손해보험사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일시에 환입해야 했다. 그러나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다면 손해보험사의 잉여금이 사외유출되어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없고 세무부담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감독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을 잉여금내의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세법도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세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비상위험준비금과 관련한 현행 세법은 IFRS 4 2단계 하에서도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신계약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신계약비가 보험기간에 걸쳐 효익을 제공하는 선급비용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 이연신계약비로서 자산으로 인식하고 7년 이내의 기간에 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에서는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를 손금으로 인정(법인세법 제19조 제2항)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는 재무회계와 동일하게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등)를 7년 이내의 기간에 균등하게 상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 그러나 IFRS 4 2단계에서는 신계약비를 직접신계약비⁵⁾와 간접신계약비⁶⁾로 구분하고 직접신계약비는 보험부채 평가

5) 판매, 계약심사 및 보험계약 개시와 직접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개별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 가능한 비용(참조: 한국계리학회·한국보험계리사회, 2015.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 4 Phase II)해설서)을 말한다.

6) 개별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할 수 없는 비용 및 비정상적 사업비(참조: 한국계리학회·한국보험계리사회, 2015.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 4 Phase II)해설서)를 말한다.

시 현금흐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보험기간에 걸쳐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접신계약비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신계약비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IFRS 4 2단계로의 변경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만일 IFRS 4 2단계에 따른 회계처리를 세법이 인정한다면 신계약비의 상각에 따른 손금 산입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 신계약비는 보험부채의 측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책임준비금과 관련하여 세법의 개정 검토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FRS 4 2단계의 주요 내용과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개선사항만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IFRS 4 2단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현행 기준을 비교하면서 재무적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기업회계의 관행을 많은 부분 수용하고 있는 보험업 관련 법인세법을 살펴보고 IFRS 4 2단계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IFRS 4 2단계로 보험회사의 보험부채 측정과 보험료수익 및 비용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회계기준을 수용하고 있는 관련 법인세법은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부채의 인식 시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 IFRS 4 2단계에서는 책임준비금의 전입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수익의 사외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계속 달성하고자 한다면 신고조정을 통해서라도 계속 손금으로 산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과 동일한 금액의 책임준비금 인식을 위해서는 두 개의 시스템 운영을 필요로 하므로 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를 IFRS 4 2단계 재무회계의 발생주의에 따른 인식시기와 일치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IFRS 4 2단계에 따라 보험료수익을 인식하더라도 전 기간에 걸친 보험료수익은 실제로 현금으로 수취하는 보험료와 일치하게 된다(투자요소 제외). 둘째, 각종 사업에서 익금으로 산입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이며 IFRS 4 2단계에서 인식하는 보험료수익은 이에 대응하는 금액이다. 셋째, IFRS 4 2단계에서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과 사업비에 대응해 예상 보험금과 사업비 및 계약상 서비스 마진 상각액의 합을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기간별로 이익이 일정하고 안정적이다. 즉 안정적인 세원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IFRS 4 2단계 도입 시 세무상 보험료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IFRS 4 2단계에서도 보험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비상위험준비금은 2011년 IFRS 도입 시 개정한 세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IFRS 4 2단계에서는 신계약비를 직접신계약비와 간접신계약비로 구분하고 직접신계약비는 보험부채 평가 시 현금흐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보험기간에 걸쳐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접신계약비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일 IFRS 4 2단계에 따른 회계처리를 세법이 인정한다면 신계약비의 상각에 따른 손금 산입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이 IFRS 4 2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세법의 모든 개정사항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안정된 세원의 확보와 납세를 위한 제반 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해 IFRS 4 2단계의 도입 전 세법에 대한 더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 IFRS 4 2단계의 적용 시 어떻게 조세 제도를 개선하는지에 대한 조사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2011. 보험회계해설서.
- 김문철 · 이준규. 2008.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 155-185.
- 김왕문 · 고영우. 2012. “Solvency II 고찰을 통한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4 2단계)의 도입 방안 연구”. 회계연구 제17권 제3호 : 177-209.
- 김은경. 2015. “IFRS 4 보험계약 2단계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및 손해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월간손해보험 2015년 4월호 : 50-61.
- 김종원. 2013. “보험회사 국제회계기준적용에 따른 재무제표 전환의 실증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ol.13 No.5 : 387-395.
- 신병오. 2015. “보험사 경영패러다임의 변화(IFRS 4 2단계 도입 영향과 준비)”. 딜로이트 안진회 계법인 딜로이트 컨설팅 : 1-11
- 심태섭. 2011. “IFRS도입과 관련된 2010년 세제개편의 평가”.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1호 : 45-87.
- 오창수. 2011.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보험상품의 영향분석”. 리스크관리연구 제22권 2호 : 159-188.
- _____. 오수연 · 오창영 · 이성호 · 이창욱. 2012. “Solvency II 기준에 따른 보험부채평가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23권 제1호 : 147-185.
- _____. 유인현 · 박규서 · 강원재. 2013. “IFRS 4 기준하의 보험부채평가에 관한 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24권 제2호 : 99-122.
- _____. 이행금. 2013. “IFRS 4 수정된 공개초안의 주요 특징과 영향”. 계리학연구 제5권 제1호 : 91-116.
- _____. 조석희. 2014. “IFRS 4 수정공개초안에 따른 보험손익의 산출구조에 관한 연구”. 계리 학연구 제6권 제1호 : 27-58.
- 이장형 · 김종원. 2012. “보험회계의 IFRS 적용에 따른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산회계 학회 : 158-173.
- 임상엽 · 정정운. 2013. 「세법개론」 제19판. 상경사.
- 조석희. 2013. “2단계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영향_보험부채 평가를 중심으로 한 종신보험계 약의 사례”. 회계저널 제22권 제2호 : 297-333.
- 조형태 · 장연호 · 홍군화 · 심태섭. 2011. “IFRS도입에 따른 보험준비금 관련 세제 개편과 업계 대응 노력”. 회계저널 제20권 제2호 : 277-312.
- 한국계리학회 · 한국보험계리사회. 2015.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II)해설서

- 한국회계기준원. 20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 _____. 2015. “IFRS 보험회계기준 2단계 도입과 한국의 대응”.
- _____. 2015. “IASB 한스위원장 초청 보험 이해관계자 회의 : IFRS 4 2단계 도입에 따른 한국 보험산업의 영향”.
- IASB. 2007. IFRS 4 Insurance Contracts Phase II Discussion Paper : *IASB's Preliminary view*.
- _____. 2010. IFRS 4 Insurance Contracts Basis for Conclusion(ED).
- _____. 2010. IFRS 4 Insurance Contracts Exposure Draft.
- _____. 2013. High level summary of the proposals.
- _____. 2013. IFRS 4 Insurance Contracts Revised Exposure Draft.
- _____. 2013. Investor Perspectives article : *The long and winding road*.
- _____. 2013. Snapshot A.
- _____. 2013. Web presentations.
- _____. 2015. Insurance Contracts : *project overview*.
- _____. 2015. Investor Perspective : *Insurance contracts accounting : Are we there yet?*
- _____. 2015. Project update : *Insurance Contracts without Participation Featur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Tax Law applied to Insurance Business for Adoption of IFRS 4 Phase II

Eun Kyung Kim* · Moonchul Kim**

— <Abstract> —

After the adoption of IFRS 4 Phase II, insurance companies should modify their ways in which they have measured and recognised their insurance contract revenue, incurred claims and expenses, and insurance liability. In addition, the current tax law is expected to be influenced by this change because it includes regulations or contents which are similar to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This study will consider the effect of the adoption of IFRS 4 Phase II on corporate tax law applied in insurance business and suggest how it can be altered.

Firstly,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specifies that the liability reserve fund (under the provis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other Acts) shall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in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amount for the concerned business year. However, according to the IFRS 4 Phase II, the liability reserve fund is not recognised as expenses. This study will present measures to maintain the same effect of current tax implementation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FRS 4 Phase II.

Secondly, this study suggests adjusting the period during which gross income and deductible expenses accrue. In contrast to the current tax law which includes premiums in the gross amount for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amount at the time of their receipt, this study proposes that insurers include their premiums in the gross amount at the time when they recognize their insurance contract revenue on the accrual basis. The reasons are as follows. The insurance contract revenue under the IFRS Phase II would be the same as the total premiums received for the whole insurance period. Other businesses include their sales under financial accounting for the gross figure in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amount under the tax law and the insurance contract revenue under IFRS 4 Phase II is corresponding to those amounts. Including the insurance contract revenue in the gross figure in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amount would be stable for collecting taxes period by period. Requiring insurers to persist with the current liability reserve fund would cause tax compliance cost.

* Master Candidat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piggy0925@hanmail.net,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kimc@khu.ac.kr, Corresponding Author

Finally, the necessity of changes in tax regulations related to contingency reserve funds and deferred acquisition costs will be discusse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ax regulation related to the contingency reserve funds should remain the same as the current tax regulation under IFRS 4 Phase II. Furthermore, the related tax law on acquisition costs will have to be removed.

This study would be the first of its kind to consider the change in corporate tax law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K-IFRS 1104 and the IFRS 4 Phase II. Facing the introduction of new insurance accounting standards, this study will play a key role in initializing the various discussions about how to improve and modify the related tax laws.

<Key words> IFRS 4 Phase II, Insurance business, Insurance contract revenue, liability reserve fund